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3 선고 2019가합55973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4. 주식회사 E

5. F

변론 종결2020. 5. 19.

판결 선고2020. 6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, C는 연대하여 264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9.부터 2019. 2. 17.까지는 연 6%, 2019. 2. 18.부터 2019. 11. 17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주식회사 B, D은 연대하여 137,698,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15.부터 2019. 3. 16.까지는 연 6%, 2019. 3. 17.부터 2019. 11. 17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다. 피고 주식회사 B, D,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8.부터

2019. 2. 16.까지는 연 6%, 2019. 2. 17.부터 2019. 11. 17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각 지급하라.

2. 피고 D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8. 31. 체결된 매매계약을
취소한다.

3. 피고 F은 피고 D에게,

가. 별지 1 목록 가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3.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24305호로
마친,

나. 별지 1 목록 나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3. 위 등기국 접수 제324306호로 마친

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B, C, D, F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

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심재남

판사이수웅

판사여동근

별지